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5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김영배·복기왕·윤후덕

전현희 • 이학영 • 박희승

이병진 · 강유정 · 민형배

한병도 • 고민정 • 박범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제품의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의 적용 대상에 제품의 제조만큼이나 포장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택배, 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되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장폐기물"을 "포장폐기물(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u>포장폐기물</u> 의 발생을	포장폐기물(제품의 수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u>을 포함한다)</u>
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